

충청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6. 7. 19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 출 일 자 : 1996년 7월 9일

○ 회 부 일 자 : 1996년 7월 9일

다. 상 정 일 자 : 1996년 7월 19일

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보건환경국장 조 규 린)

가. 제 안 이 유

-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의 모법인 환경보전법이 '90. 8. 1일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
- '92. 7. 1일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로 개편되었으며 '95. 7. 1일 부지사가 행정, 정무부지사로 복수화 개편되었음에 따라 동조례 규정중 설치근거법과 위원장 및 간사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 요 골 자

○ 제1조 (목적)

"환경보전법 제11조"을 → "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"로

○ 제3조 제2항 (구성)

위원장은 "부지사"를 → 위원장은 "행정부지사"로

○ 제8조 (간사와 서기)

간사는 "환경보호과장"을 → 간사는 "환경관리과장"으로 변경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충청북도환경보전전자문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

환경보전전자문위원회 운영 근거법 변경('90.8.1) 및 도 직제 개편('92.7.1) 및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('95.8.11)에 따라

관계법령 변경과, 위원장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

본 조례안을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관련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충청북도 직제규칙이 각각 '90. 8.1, '92. 7. 1

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례의 개정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체됨으로서,

그간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

4. 질 의 및 답 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개 정 조 례 안 : 별 첨

8. 신·구 조 문 대 비 표 : 별 첨